

노·무·상·담

공인노무사 강경만



산을 인정받기가 어려운 일정규모(상 시근로자 300인 이하)의 기업에 지방 노동관서의 장이 사실상 도산을 인정 할 수 있도록 함

3.채당금의 지급액
채당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업 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보장 받을 수 있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최종 3 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임

최종 3월분의 임금 :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의 종료일부터 소급 하여 3개월간의 근로로 인하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일체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 퇴직일을 기준으로 소급한 3년간의 법정퇴직금 (90일분의 평균임금)

4. 채당금의 청구와 지급절차
도산등사실인정을 받고자 하는 퇴 직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함.

☞한국중합노무법인한솔사무소 (031-877-7582-3)

기업이 도산 시 지급받는 임금 채권보장제도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1. 임금채권보장제도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미지급임금 등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국가가 일정범위 내에서 사업주를 대신해서 지급하는 제도 임. 이 경우 국가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등의 범위 내에서 당해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함.
2. 채당금 지급요건

도산등사실인정란 사업주가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도산 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에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도산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함.

이 경우 사실상 도산 상태란 당해 사업주가 ①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 지과정에서 있고, ②미지급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경우를 말함.

도산등사실인정을 채당금의 지급사 유로 인정하는 이유는 도산의 대부분 특, 중소규모에서 발생하는 도산의 다수가 법률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른바, 사실상 도산의 형태로 일어나 고 있기 때문임 이에 따라 재판상 도

전·기·상·식

경기북부전기안전관리공사 대표이사 안병호



은 전력설비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심야전기시간에는 전기사용이 적으므로 심야시간에 전기를 이용하여 열을 저장하여 두었다가 전기가 많이 필요한 낮에 사용하므로 주간부와 심야부하간 격차를 완화하고 전력 설비 이용률을 극대화 하므로서 운전 비를 절감하여 장기적으로 전기요금 안정을 도모하고 양질의 전력을 공급 하기 위하여 한전에서는 심야전력기 기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Q 심야전력에 따른 전기설비는 누가 소유하게 됩니까?

A 심야전력용 전기설비중 계량 기와 타임스위치는 심야전력 사용량 계량에 따른 설비이므로 한전 에서 소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육내 배선설비는 고객이 소유·유지 관리하여야 합니다.

경기북부전기안전관리공사(031-941-9111)

Q 심야전력요금제도란 전기 사용이 적은 심야시간(밤 10시 ~ 다음날 아침8시)에 축열기능 을 가진 심야전력용기기를 사용할 경 우 해당기기의 사용전력량에 대하여 일반 전기요금보다 저렴한 요금을 적용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1. 심야전력이용기기 : 축열식전기 온수기, 전기물풍기, 전기보일러, 전 기온풍기, 태양열 온수기 등
2. 심야전력 이점
가. 일반전기요금의 1/4가격으로 24 시간 난방 및 온수 사용가능함.

나. 폭발이나 가스중독의 염려가 없 어 안전함.
다. 자동타임스위치로 자동 작동되 어 편리함.
라. 연료를 교체할 필요가 없어 쾌 적함.

Q 심야전기를 권장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 전기는 생산과 동시에 소비되는 특성으로 인하여 전기를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 낮이나 초저녁같이 전 기가 많이 필요한 시간대를 위하여 많

의·학·상·식

포천 안과과장 최진호



처리와 피부질제 4) 안와지방제거, 눈 물레근 처리와 피부질제를 복합적으로 하는 경우 등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 으며 수술법으로는 눈 안쪽 절막부위 를 절개도나 레이저로 절개하여 지방 을 빼주고 눈꺼풀 아래쪽의 피부부위 는 필요한 만큼만 절개하여 처지고 남 게 되는 여분의 피부를 잘라주어 젊어 지는 인상을 만들어 주는 수술법을 가 장 많이 선호합니다. 피부를 절개하면 흉터가 남지 않나 걱정하는 분들이 있 는데 피부 절개부위는 하측 쌍꺼풀선 을 이용하기 때문에 흉터가 눈에 띄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젊은 성인들의 경우 피부절개 없이 결막만을 절개하 여 눈밑지방을 빼는 경우도 있어 이런 경우는 아예 흉터가 남지 않습니다.

회복기간은 약 일주일 후 실밥을 뽑 은 이후엔 모든 생활이 가능한 정도 로 빠르게 볼록한 지방과 늙어 보이 는 인상 때문에 고민하는 남녀 모든 분들께 권하고 싶은 수술이며 이러 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술이다.

☞포천병원(031-539-9114)

Q 【눈주위의 노화 현상과 하안검 성형술】 볼록 튀어나온 눈 밑의 지방덩어리 때 문에 답답한 인상을 주게 된다면.

A 하안 검에는 크게 세부분의 지 방 주머니가 있는데 나이가 들 어감에 따라 이 안검부위의 지방이 눈 밑의 근막에 고이게 되고 피부탄 력이 소실됨에 따라 중력 방향으로 처지면서 심하게 볼록 튀어나와 보이 게 됩니다. 빠르면 20대 후반부터 시 작되는 이 현상으로 인해 안검이 늘 어지게 되면서 주름이 지고 늙어 보 이며 피곤해 보이고 짜증스럽게 보여 타인에게 나쁜 인상을 심어 줄 수도

있습니다. 심술단지라고 말하는 분들 도 있지요. 이 경우 가장 효과가 좋은 방법이 수술적 치료법입니다.

물론 수술전에 하안검의 주름, 피부 의 이완상태 및 안와지방의 빠져나온 상황을 체크하고 눈꼬리가 처진 형태 를 파악하여 도안을 하는 작업이 먼저 필요하며 환자에게 어느 곳이 가장 경직되는 곳인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 가 있습니다. 수술을 받으시는 분도 가장 교정하고 싶은 점이 어떤 점인지 를 정확히 파악해 주시는 것이 좀더 나은 수술결과를 위해 필요합니다.

수술방법으로는 피부 이완의 정도에 따라 1) 피부만 절제하는 경우 2) 안 와지방만 절제하는 경우 3) 눈물레근

법·률·상·담

변호사 김제동



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 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 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 선전광 고에 다소의 과장·허위가 수반되는 것 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 (信義則)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옹도가 특정된 특수시절을 분양받을 경 우 그 운영을 어떻게 하고, 그 수익은 얼 마나 될 것 인지와 같은 사항은 투자자 들의 책임과 판단하에 결정될 성질의 것 이므로,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 곳에 첨 단오락타운을 조성하고 전문경영인에 의 한 위탁경영을 통하여 일정 수익을 보장 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였다고 하여 이 로써 상대방을 기망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거나 상대방이 계약의 중 요부분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분양계 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 볼 수 없다."라 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55601 등 판결, 1993. 8. 13. 선고 92 다52665 판결, 1995. 9. 29. 선고 95다7031 판결).

따라서 甲이 위 분양선전광고에 다소 의 과장·허위가 수반된 것 등을 이유로 乙회사와의 분양계약을 취소시키는 것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5789 판결).

☞문의: 김제동 변호사(031-829-9311)

Q 【상가분양광고시 과장된 수익성보 장 등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 甲은 乙회사로부터 신축상가건물을 분양 받는지에 관한 관례를 보면,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 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운영 하고 전문경영인에 의한 위탁경영을 통 하여 분양계약자들에게 월 100만원 이상 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하고, 분양계약체결시에도 이러한 광고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분양계약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으나, 乙회 사의 위 상가에 대한 임대운영현황을 보 면 위 광고내용과 다소 다를 뿐만 아니 라 수익도 위 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 고 있습니다. 이 경우 甲이 허위·과장 광고를 이유로 위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요?

A 민법 제110조 제1항에 의하면 "사 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 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 운영방법 및 수익성 보장에 대하여 다소의 과장· 허위광고가 수반된 경우 기망행위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관례를 보면,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 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 성·운영하고 전문경영인에 의한 위탁경 영을 통하여 분양계약자들에게 일정액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하고, 분양계약체결시 이러한 광고내용을 계약 상대방에게 설명하였더라도, 체결된 분 양계약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점과, 그 후의 위 상가 임대운영경 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광고 및 분양계약 체결시의 설명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할 뿐 상가분양계약의 내용 으로 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분양 회사는 위 상가를 첨단오락타운으로 조 성·운영하거나 일정한 수익을 보장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서 거래의 중요 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

여·성·상·식

포천 가족·성 상담센터 이문환



비슷하거나 개인차가 인정하지만 실제로 남성과 여성은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여성에게 기대하는 행동 규범에는 차이가 있다. 남성을 사에서 성적 능력은 남성 다음의 전형으로 인정되거나 과사되기 때 문에 남성의 성은 허용된다. 반면에 여성 의 성은 당혹스러운 것이거나 상대방의 행실에 의의가 간다. 혹은 혐오감이 든다. 호감의 의사표현으로 생각하는 등 여성다 음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여성다움의 적극 적 표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성별에 따 른 이중 규범이 여전히 남성과 여성에게 적용되고 있다. 남평들의 의도는 자신들 의 의도를 정당화, 합리화하려는 경향이 특징이라면, 아내들은 자신의 성격적인 문제로 돌리고 자책하는 경향이 많으며, 어떤 아내들은 술과 사립 때문이라는 남 평들의 변명을 그대로 따르기도 했다.

☞문의: 포천가족·성상담센터(031-524-3171)

한국사회의 성문화와 외도

외도란 결혼한 부부가 배우자 이외의 이성과 성적, 정서적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최근 한국사회에서 성은 성교육, 부부간의 성, 혹은 청소년들의 성 매매 문제인 원조교제 등을 통해 이 루어지고 있고, 남성과 여성의 세계에서 다른 방식으로 언설화되고 실천되고 있 고, 남성과 여성에 따라 성규범 체계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남 성인가 여성인가 하는 것은 성 인식, 태 도, 행동을 다르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따라서 한국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의 성 체험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최근 여성들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성적 쾌락을 즐길 권리를 갖는다고, 남성과 같 은 성적 욕구를 갖고 있다는 주장이나 논 의가 등장하지만 여전히 한국사회의 지배적 인 성문화는 남성의 문화를 의미하고 있다. 남녀의 성적 욕구에 관하여는

세·무·상·담

세무사 박운중



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 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임대수입금액을 얻기 위 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인가의 판단이 중요한 열쇠인 것 같습니다. 귀하의 사례와 유사한 심판례를 소개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사용처가 불분명한 대출금의 이 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 습니다.】 부친의 사망으로 임대용 부동산을 상속 받았습시다. 동 부동산에는 부친이 생존 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부친의 개인목적으로 사용한 차입금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출금 지급이자를 임대소득 에 대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요?

A 상속받은 임대사업용 부동산에 피 상속인의 개인 목적으로 사용한 대 출금이 있는 경우, 상속 이후 부동산임대 업을 영위하는 동안 동 차입금 이자를 부

동산임대수입금액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입니다. 국세기본법에서는 실질과세 규정을 두 고 있는 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의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 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 세의무가 관한 것이며, 세법 중 과세표준 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 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임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

★과상속인이 임대용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 는 주식회사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차 입금은 부동산임대사업의 수입금액을 얻 기 위해 직접 사용된 것이 아니라 그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된 것이므로, 동 차입 금 이자 또한 부동산임대사업의 수입금액 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으며, 그 후 상속절차를 거쳤다고 하여 업무관련 차입금이 업무관련 차입금으로 되는 것 은 아니므로 상속받은 후 상속인이 부담 하는 지급이자를 임대수입금액에 대응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세무사 박 운 중 031-872-6116

풍산 그라비아 POONGSAN GRAUVRE 포장지 제조라인을 모두 갖춘 전문회사

생명력을 가진 식품 포장재 생산!!!
좋은 품질과 저렴한 가격으로 포장재를 생산합니다.

생 산 품 목
지퍼백, 진공포장지, 제과봉투류
커피봉투류, 각종 호일팩류
애견 식품 및 용품포장류
낙시용품 포장지류

가 공 제 품
스탠딩삼방, M자가공,
스탠딩지퍼, T자가공, 지퍼삼방
기타 다양한 가공, 생산설비보유

용 도
농산물 가공식품, 수산물 가공식품
축산물 가공식품, 조식식품
기타 각종비닐포장지류

본사 및 공장 : 경기도 포천시 자작동 600-4 / 전 화 : (031) 536-3531 / 팩 스 : (031) 536-3530 / H·P : 011-279-4002 / 대 표 : 최 정 택